##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6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이병진·장종태·임광현

박 정・한정애・윤후덕

최기상 • 이훈기 • 이정문

박용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
	<u>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등</u>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